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4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전환우선주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세무 및 법률정보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 폐지
-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2023.4.21>]

주요내용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①(부과 과징금) 최근 5년간('19.1월 ~ '23.3월)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

** 부과총액(억원) : ('19년) 51.6 → ('20년) 93.6 → ('21년) 193.4 → ('22년) 290.3

②(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회사/임직원/감사인:(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順

□ (시사점) ①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 확대, ②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 의식 제고, ③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유인

**과징금제도
개요**

I.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

◦(부과대상)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

◦(부과기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
회사	대상법안 서류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 법상한도 없음
회사 관계자	대상자	· 회사의 대표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한도	·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 보고서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 보고서
	한도	· 감사보수의 5배

**과징금
부과현황**

II.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개황)최근 5년간('19.1월 ~ '23.3월)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사에 대하여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2억원으로 비중이 크고(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으로 30.7% 수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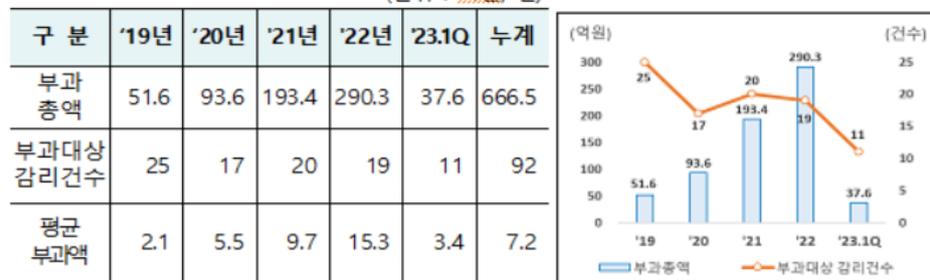
** 최대부과금액 : ('19년) 14.3억원 → ('20년) 21.4억원 → ('21년) 83.1억원 → ('22년) 75.0억원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

* ('19년) 2.1억원 → ('20년) 5.5억원 → ('21년) 9.7억원 → ('22년) 15.3억원

과징금 부과현황 ('19.1월~'23.3월)

(단위 : 억원, 건)



□ (부과대상별)'19년~'23.3월 기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8억원으로 대부분 (85.2%)을 차지하며, 회사관계자 58.5억원(8.8%), 감사인 40.1억원(6.0%) 順으로 부과

◦(회사)부과 과징금(567.8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126.5억원)이 22.3%*

*법 체계상 부과 과징금 총액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회사관계자)전체 과징금(58.5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55.4억원)이 대부분(94.7%)으로 부과총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 추세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되어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

* ('19년) 1.0명 → ('20년) 1.4명 → ('21년) 1.7명 → ('22년) 2.1명

◦(감사인)부과과징금(40.1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2.4억원)이 55.8%를 차지하며, 부과액과 조치대상 감사인 증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개요)신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총 204.3억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총액*은 증가추세이고, 최근 '23.1분기에는 27.9억원으로 나타남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23.1Q) 27.9억원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20.1월~'23.3월)



◦회사 과징금이 126.5억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

□(회사) 부과금액 중 외감법상 과징금액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21년) 6.9% → ('22년) 33.7% → ('23.1Q) 66.8%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4건(18.2억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대상 회사 확대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19회계연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사업보고서에 공시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21.7억원을 추가로 부과

□(회사관계자)대표이사(27.7억원, 50.0%)와 담당임원(15.5억원, 28.0%)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연루된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12.2억원, 22.0%) 조치대상자가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 사례>

· (업무집행지시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의 부회장 갑(甲)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매출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집행지시자로 판단하여 동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6.9억원 부과

□(감사인) '21년 최초 부과 이후 부과금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금액(22.4억원)은 조치대상 연도 감사보수(17.8억원)의 약 1.3배로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C회계법인은 회사가 매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중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구조 파악 및 거래조건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감사보수의 150%(1.35억원)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과징금부과 효과 및 시점

III.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 및 시사점

□(회사)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어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대폭 증가

⇒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예, 감사품질 우수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등) 촉진

□(회사관계자)과징금 부과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회사는 과징금을 대체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하더라도,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식 제고 및 회계 부정 지시를 받은 기타 이해관계자(예, 최대주주 등 사주가 아닌 CEO-CFO, 회계실무자)의 부정행위 신고 증가 예상

□(감사인)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 및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

개요

전환우선주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4.4]

I.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23.3.29.)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은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세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22.9.7일,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참고

주요내용

II.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현재 전환사채에 적용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

◦ (행사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 (공시 의무)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

* 투자자가 풋옵션 행사 또는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

□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 (조정 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 (조정 범위)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 기타 전환가액·전환권 관련 적용 규제

- (전환가액 하한) 전환가액 결정·하향조정시 그 가액은 '시가' 이상으로 함
 - * 전환가액 하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과도하게 전환가액을 낮춰 발행 또는 조정하여 최대주주 등이 대량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악용될 소지
- (전환권 행사 제한) 공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발행 후 1개월,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 * 전환권 행사의 최소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호재성 소식 유포 등을 통한 주가 상승 유도 후 보통주로 전환하는 불공정거래가 용이하게 발생할 우려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III.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기대 효과) 전환사채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
- (향후 일정) 금번 개정 규정은 5.1일부터 시행(공포 1개월 후)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
 -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기획재정부는 2023.4.11.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중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11.에 시행되지만, 올해 1.1. ~ 12.31.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3% 또는 4%이던 것을 20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로 상향함
- ⇒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됨**

구분	당기분(%)			증가분(%) (직전 3년 평균 대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 폐지

2023.03.14.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에서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

- 취득세 5배 증가제도 폐지
- 재산세: 종전의 1,000분의 40 증가제도 폐지
(참고로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 ~ 1000분의 4)

○ 개정사유

-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

○ 적용시기

-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세청은 2023.04.03.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03.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2023.04.03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됩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미달 미공제분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0.00.부터 乙과 함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지분비율 50:50, 이하 "쟁점사업장")
 - '22.0.00.부터 공동사업자 乙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쟁점사업장의 유형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한편, '21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조특법§132②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됨

(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방법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 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상증세법 §41의2)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03.23)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 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회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